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11. 6 조례 제1214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20. 3. 25>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료업무대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의 장소) 의료업무대행자는 보건소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진료업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2020. 3. 25>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